

분석 결과 <표 1> 같다.

<표 1>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 분석

분 야	변전	배전	가공 송전	지중 송전	내선 플랜트	발전	전기 철도	계
품셈대 비(%)	92.2	94.4	92.3	93.8	89.5	92.5	91.5	92.4

전기분야 11년 상반기 실적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92.48% 수준이며, 반면에 토목·건축분야는 88.20%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리적인 적정공사비란 발주자와 시공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에 주안점을 둔다. 발주기관은 적정한 가격(Cost), 적당한 공사기간(Time), 만족할 만한 품질(Quality)을 들 수 있는 반면 시공사는 계속적인 공사수주의 기회확보(Opportunity), 적정이익(Profit)의 실현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가 있다. 공공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절한 전기공사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나 부실시공의 요인 등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2.1 실적공사비 계약내역서 작성 방법 방안

실적단가는 계약단가를 활용하여 산정 할 수 있다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내역서가 실적공사비의 실적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적공사비 계약내역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실적공사비 계약내역서 작성 방법의 예시

비목	계약내역서			비고
	시공사(A)	시공사(B)	시공사(C)	
직접공사비	126,000 (84%)	135,000 (90%)	142,500 (95%)	B,C 실적단가 추적
간접노무비	29,400	25,000	21,500	
간접공사비	33,600	36,000	38,000	
일반관리비	8,400	5,000	2,000	
이윤	12,600	9,000	6,000	
합계	210,000	210,000	210,000	낙찰률 84%

실적공사비의 실적단가는 직접공사비만 추적하므로 직접공사비 낙찰률 적용 방법에 따라 양호한 단가 추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시공사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 방안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내역서의 직접공사비가 설계단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역서로 수집이 되면 제도 도입 초기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기존의 원가계산방식 제도와 동일한 공사비 산정조건에서 새로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출발 시킬 수 있다. 반면 낙찰률 만큼 직접공사비에서 하락된 계약단가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작성할 경우 공사비 하락을 가져와 우리 건설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원만한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공사분야간의 형평성 고려 및 건설 산업 전체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실적공사비 도입 시 적정공사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2.2 실적단가 보정계수 적용 필요

다음은 실적단가의 보정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규모 건축공사의 적정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바 있다.²⁾ 연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하는데 있어 발생하고 있는 단가보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영향계수를 선정 하였고, 모델을 통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에 활용할 수 실적공사비 가산율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전기분야 실적단가 보정계수 개발에 참고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향후 실적단가 보정방법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여기에서 전기분야 실적단가 보정계수를 정리 하여보면 조달청의 경우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에서 발표한 실적단가가 품셈단가 대비 110% 이상인 경우 품셈단가로 조정하여 적용한바 있다. 이는 실적단가가 현행 품셈단가 대비 ±10% 범위내에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공종의 실적단가를 품셈 대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 않으며, 여기에서 전기분야 실적단가 보정계수를 제시 하여보면 발주기관에서 설계시 반영된 설계단가 대비 ±10% 범위를 벗으나 실적단가가 축적될 경우 설계단가 대비 ±10% 범위내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최저가 낙찰제로 실적단가 축적이 어려운 경우에도 큰 문제점 없이 실적단가 축적이 가능 하리라 본다.

3. 결 론

결론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집행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당연히 국가의 재정을 절감시켜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예정가격제도가 변화되면 공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므로 선진외국의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성공적인 정착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적단가의 적정단가를 확보하여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정단가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낙찰률 저하에 따른 실적단가 축적이 곤란한 경우 설계단가 대비 90%로 보정하여 실적단가를 산정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적단가 하락에 따른 실적단가의 보정계수를 도입을 고려하여 불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 관리기관으로 하여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 및 표준화 연구를 통해 토목 및 건축부문의 추진상황과 보조를 같이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을 위한 전기부문의 실적단가 추적,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실적단가 추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실적단가 추적 및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새로운 적산제도의 국내시행 및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물과 축적된 실적단가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보완연구, 원가계산방식과의 비교 실적단가의 기술적 분석은 물론 신규공종의 지속적인 확대 선정과 홍보, 교육을 통한 급격한 제도 전환에서 오는 충격을 완만하게 받아들이기 필요가 있다. 향후 실적단가 추적단계를 지나 실적단가의 내실화 연구에 한층 노력하여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시공 품질확보는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지식경제부,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 지침서”, 2009
- [2] 김강식의, “소규모 건축공사의 적정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 개발”, 한국건축시공학회, 제10권 1호, 2010
- [3]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전문위원회 춘계학술대회, 2009
- [4] 지식경제부, “실적공사비에 의한 전기부문 공공건설공사 적산제도 표준화에 대한 중간보고서” 한국전기공사협회, 2003
- [5] 지식경제부,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표준화 및 실적단가집 D/B개발에 관한 보고서” 한국전기산업연구원, 2011